

이의신청기간의 기산

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용절차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, 다만 그 수용재결서의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.
(대법원 1995.06.13. 선고 94누9085 판결)

※ 같은 뜻의 사례 : 대법원 1993.12.14 선고 93누9422 판결 ; 1994.04.26 선고 93누13360 판결